

『구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4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4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4월 18일

제1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 자 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주차장법」 제21조와 「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 제4조에 의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 비용지원, 경형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경형자동차 우대, 보훈단체 주차요금 감면 규정 마련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경형자동차 및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(안 제4조의2제3호)
  -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 무료, 2시간 이후 50% 감면(증명서제시)

- 보훈단체 주차요금 감면(안 제4조의2제8호)
  -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: 면제(증명서제시)
-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(안 제8조제6항)
  - 공영주차장(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)의 10%이상 경차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
- 주차장 설치 보조대상(안 제20조)
  - 개인 소유의 기존 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
- 보조내용(안 제21조)
  - 보조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, 주차면 1면당 최고 1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
- 보조금 회수(안 제25조)
  -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 하였을 때
  - 주차장용도를 변경한 때
  -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
  -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

## 라. 참고사항

- 「주차장법」 및 「주차장법 시행령」
- 「자동차관리법」
- 「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 제4조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「주차장법」 제21조와 「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」 제4조에 의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, 보훈단체 주차요금 감면 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써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경형자동차 및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(안 제4조의2제3호)
  - 보훈단체 주차요금 감면(안 제4조의2제8호)
  -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(안 제8조제6항)
  - 주차장 설치 보조대상 및 설치비용 지원안 마련 (안 제20조 및 21조)
- 「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」의 일환으로 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한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며,(안 제20조 및 제21조)
-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감축 효과 및 경형 자동차 우대안에 따른 경차보급률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